

거래가격 조정신고서

(앞쪽)

신고인	① 법인명(상호)					② 사업자등록번호				
	③ 대표자(성명)									
	④ 업종					⑤ 전화번호				
	⑥ 소재지(주소)									

국외특수 관계인	⑦ 법인명(상호)					⑧ 소재국가			
	⑨ 대표자(성명)					⑩ 업종			
	⑪ 신고인과의 관계	지배	피지배		자매		실질 지배	본점·지점 등	
	⑫ 소재지(주소)								

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 가격 조정 내용

⑬ 거래 구분	⑭ 거래 종류	⑮ 조정대상 법인	⑯ 정상가격 산출방법	⑰ 조정항목 (수익성지표)	⑱ 실제거래가격		⑲ 정상가격						⑳ 조정금액 (원단위)	㉑ 조정 금액이 귀속되어야 할 국가	차이금액 조정		
					비율 (%)	금액 (원)	하위		중위		상위				㉒ 반환 (예정)여부	㉓ 반환 (예정)일	㉔ 소득처분
							비율	금액	비율	금액	비율	금액					
계																	

작성방법

※ 이 신고서는 조정대상 거래별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합니다.

-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"원"을 단위로 합니다.
- ①~⑥: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- ⑦~⑩: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- ⑪: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 -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(출자지분)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 가목): "지배"란에 "√" 표시
 -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(출자지분)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 나목): "피지배"란에 "√" 표시
 - 제3자와 그의 친족등이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(출자지분)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2호): "지배"란에 "√" 표시
 -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): "실질 지배"란에 "√" 표시
 -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: "본점·지점 등"란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- ⑫: 매출 또는 매입을 선택합니다.
- ⑬: 유형자산, 무형자산, 용역, 금전대부(금전대차), 지급보증, 이행보증, 기타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.
- ⑭: 분석대상법인이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(원가가산법, 재판매가격법, 거래순이익률법)을 선택한 경우, 분석대상법인으로 활용한 법인(① 또는 ⑦임)을 기재합니다. 그 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, 회사가 이전가격 분석 당시 조정대상으로 검토한 법인명(① 또는 ⑦임)을 기재합니다.
- ⑮~⑰: ⑮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아래 표의 약어로 기재합니다. ⑰ 조정항목(수익성지표)는 ⑮의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른 아래 수익성지표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.

구분	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	재 판매가격방법	원가가산방법	거래순이익률방법	이익분할방법	그 밖의 합리적 방법
약어	CUP,CUT	RP	CP	TNMM	PSM	기타방법
조정항목 (수익성지표)	가격,요율	매출총이익률 (매출총이익/매출)	매출/매출원가	영업이익률	공헌도분석	사용한 지표를 간단히 기재
		기타 (사용한 지표를 직접 기재)	기타 (사용한 지표를 직접 기재)	자산수익률	잔여이익분할	
				총원가가산율		
				Berry Ratio	기타	
				기타비율		

- ⑮ :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실제로 적용된 비율 또는 금액을 적습니다. 분석대상법인이 있는 경우 ⑰에 따른 분석대상법인의 수익성지표 값을 기재합니다.
- ⑮: 비교대상법인(거래)의 정상가격을 적습니다.(비율 또는 금액) ⑮에 분석대상법인의 수익성지표 값을 기재한 경우, ⑮에는 비교대상법인의 수익성지표 값의 정상사분위범위를 기재합니다. ⑮에 비율을 기재한 경우, ⑮에 비율을 기재하고, ⑮에 금액을 기재한 경우, ⑮에 금액을 기재합니다.
- ⑮: ⑮ 실제거래가격과 ⑮ 정상가격의 차이를 금액(원)단위로 기재합니다.
- ⑮: 조정금액이 귀속되어야 하는 국가를 기재합니다.
- ⑮~⑮는 아래의 방법으로 작성하되, ⑮에서 "본점·지점 등"란에 "√" 표시를 한 경우 ⑮와 ⑮는 작성하지 않으며, ⑮의 국가가 한국인 경우 ⑮에 "기타사외유출"을 기재합니다.
- ⑮: 조정금액이 ⑮의 국가로 국조법 제13조, 국조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 예정인 경우 "여"로 기재하고, 그 외의 경우 "부"로 기재합니다. ⑮의 국가가 한국이고,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(실상 폐업 포함)한 경우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국조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 또는 조정하므로 ⑮에 "부"로 기재합니다.
- ⑮: ⑮가 "여"인 경우 ⑮의 국가로 송금(수취) 예정일 등을 기재합니다.
- ⑮: ⑮의 국가가 한국이고 ⑮가 "부"인 경우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전소득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를 기재하며, ⑮의 국가가 한국이 아닌 경우 ⑮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